# -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 관리·운영 시무 -민간위탁(신규위탁) 동의안

의 안 번 호

제출년월일: 2022. . .

제 출 자:대구광역시장

# 1. 제안이유

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성서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위탁형태를 독립채산제(수익창출형)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성서운동장 관리·운영 사무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    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사무 기준)
    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위탁사무 대상)
    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
    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    - 「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
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
  -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비부담 완화
  -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 시민 및 선수들의 기량 향상
- 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: 성서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
- 라. 위탁시설 개요
  -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
  - 규 모

- 부지: 44.668.70㎡

- 연면적 : 5.192.53㎡

○ 지원시설

- 준공일 : 2007. 4. 13.

- 수영장, 헬스장, 테니스장 등 기타 부대시설

#### ○ 운영현황

연 도	수탁기관	이용자 수(명) (유료 이용자 연인원)	수입(원) (위탁금)	지출(원)	비고
2020	대구광역시체육회	80,567	1,034,220,528 (674,500,000)	949,209,885 (645,740,280)	• `22년도
2021	대구광역시체육회	85,856	1,664,316,914 (1,085,000,000)	1,424,580,470 (1,043,671,195)	이용인원(무료포함): 연27만명 정도 (실내·외, 실내게
2022 (예상)	대구광역시체육회	90,000	1,630,000,000 (709,800,000)	1,630,000,000 (709,800,000)	이트볼장 포함)

- 2022년 성과평가내역(평가기관 : ㈜가치경영원)
  - 종합평점 97.73점 가등급

#### ※ 등급부여기준

UI)	가	나	다	라	Oł
평 점	100~90	89~80	79~70	69~60	59 이하

### 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3.1.1. ~ 2025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위탁형태 변경 : 독립채산제 ⇒ 예산지원형 시설(민간위탁금 지원)

#### ○ 변경사유

-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자체 수입 감소
-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공사 필요
-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인상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독립채산제 유지의 어려움

#### ○ 위탁조건

-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기관 책임하에 관리하되, 운영 적자를 감안하여
  최소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지원
  - · 인건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관리비 등 운영비는 시비 지원 ※ 평가담당관-6123(22.8.11.)호 관련(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)

아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(2023년 (가)예산안 기준)

비 목 명	금 액(천원)	산출내역	
일반운영비	909,560	제세공과금, 시무용품 구입비, 유자만리비 등	
여비, 업무추진비	11,940	출장에비, 기관운영업무추진비(행사비 등)	
예비비	48,500	예산의 5%	
총 계	97,000		

자. 만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: 조건부 적정(인건비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관리비 등 운영비는 시비 지원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1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: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(붙임2)

# 붙임1)

####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쪼례

- 제4조(위탁사무 기준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 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- 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- 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  - 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 - 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 - 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  - 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**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**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 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 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 - 3. 경제적 효율성
  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 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 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 - 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대구광역시 시무의 민간위탁 쪼례

- 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.
  -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- 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·선수육성·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·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,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 - 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적용한다.